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43회 임시회

# 검 토 보 고 서

2020. 9. 8. (화)

검 토 안 건	발 의
“서울특별시 마포구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원



**복지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조광현)

“서울특별시 마포구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검토보고자 : 전문위원 조광현)

## 1. 회부경위

- 제출자 : 이필레 의원 외 7명
- 제출일 : 2020. 9. 2
- 회부일 : 2020. 9. 3 (의안번호 : 20-125)

## 2. 제출이유

교복구입비 지원 대상을 현재 마포구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에서 외국인사실증명 등록지가 마포구로 되어 있는 외국인 학생까지 확대하여 차별 없는 교복지원을 하기 위함.

## 3. 주요내용

- 가. 지원대상 확대(안 제4조)
  - 외국인사실증명 등록지가 마포구로 되어있는 외국인 학생 포함

##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1) 「교육기본법」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 2)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제22조(조례)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기타사항
  - 1) 입법예고 : 2020. 8. 28. ~ 2020. 9. 1.

##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평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교육복지를 통한 교육도시를 실현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외국인 학생도 등록지가 마포구로 되어 있는 경우까지 수혜 대상을 확대하여 차별 없는 교복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4조에 외국인 등록지가 마포구로 되어 있는 외국인 학생의 경우도 지원하도록 수혜 대상을 확대하여 차별 없는 교복지원을 하고자 함.
  
- 우리구에 등록된 외국인 학생현황을 보면 2020년 8월 현재 외국인사실증명 등록지가 마포구로 되어 있어 교복구입비 지원 대상 외국인 학생은 5명으로 파악 되었으며, 그 밖에 상암동에 위치한 외국인 특수학교로 “드와이트스쿨”과 “일본인 학교”가 있음.
  
- “드와이트스쿨은” 미국 뉴욕시티에서 개교한지 100년이 넘는 외국인 학교로 상암동에는 2012년 개교하여 주로 외국인 공관, 교수, 상사 등에 근무하는 사람의 자녀들이 다니고 있으며, “일본인학교”는 1972년 용산구 한남동에서 개교하여 2010년 상암동으로 이전한 학교로 서울 인근에 거주하는 일본인 자녀를 위하여 설립된 학교임.

## ○ 검토 종합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조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 해당되고, 「교육기본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학습자에게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적법 타당하다 판단됨.

다만, 조례 시행과정에서 연간학비가 수천만원에 달하는 “드와이트스쿨” 학생과 국민정서에 반하여 “일본인학교” 학생에 대한 지원은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대상 및 범위를 신중하게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참 고 자 료]**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지원대상) ① 교복구입비 지원대상은 구청장이 정한 기준 일 현재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u>학생으로서</u> 교복을 입는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으로 한다.</p> <p>② (생 략)</p>	<p>제4조(지원대상) ① ----- ----- ----- ----- <u>학생(외국인 학생은 외국인사실증명 등록지가 마포구로 되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u> ----- -----.</p> <p>② (현행과 같음)</p>

## [관계 법령]

### 교육기본법

[시행 2019. 6. 19] [법률 제15950호, 2018. 12. 18, 일부개정]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①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의 교원 수급 등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부칙** <제15950호, 2018. 12. 1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 2019. 12. 25] [법률 제16057호, 2018. 12. 24, 타법개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 4. 6., 2007. 5. 17., 2009. 12. 29., 2011. 7. 14., 2017. 4. 18., 2018. 12. 24.>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가. 유아원·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운영·지도

나. 도서관·운동장·광장·체육관·박물관·공연장·미술관·음악당 등 공공교육·체육·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다. 지방문화재의 지정·등록·보존 및 관리

라. 지방문화·예술의 진흥

마.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

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에 관한 사무

가. 지역 및 직장 민방위조직(의용소방대를 포함한다)의 편성과 운영 및 지도·감독

나. 지역의 화재예방·경계·진압·조사 및 구조·구급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